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 30조의 규정에 따라 루터대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관리와 지원, 장애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무장애 환경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루터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기능) 센터에서는 장애학생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1조의2(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2023.8.30.개정)
 -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23.8.30.신설)
 -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대학원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2023.8.30.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2023.8.30.신설)
2. 장애학생 및 도우미의 관리 (2023.8.30.개정)
3. 장애학생의 신상자료 관리 (2023.8.30.개정)
4. 무장애 환경구축 및 장애학생의 편의 지원 (2023.8.30.개정)
5.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지원 (2023.8.30.개정)
6. 장애학생의 고충처리 및 상담 (2023.8.30.개정)
7. 장애 이해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23.8.30.개정)
8. 교수학습 지원 보조 및 프로그램 개발 (2022.11.23.개정),(2023.8.30.개정)
9.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2023.8.30.신설)

제 2 장 조 직

제4조(조직) 센터는 교학처 산하에 두며 장애학생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로 조직한다. (2017.8.31.개정),(2022.11.23.개정)

5-10-1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1. 센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및 담당직원, 행정조교를 둘 수 있다.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023.8.30.개정)
 -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 (2023.8.30.신설)
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023.8.30.신설)
 -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2023.8.30.신설)
 -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23.8.30.신설)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총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023.8.30.신설)
3. 센터장은 센터의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장애학생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제 3 장 (2023.8.30.삭제)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